EPS 농산물 상자 표준규격 포함

포장 두께 조정은 재조사 후 개정 적용 예정

2011년 1월 '완구 · 인형 및 종합제품 EPS포장 사용 금지 규정의 삭제'로 EPS에 대한 규제가 완전 해제됨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「농산물품질관리법」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EPS 포장상자를 포함한 농산물표준규격을 개정 고시(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1-45호, 2011. 12. 21.)하였다.

고시에 따르면 농산물의 포장치수는 다음과 같다.

(제4조 포장치수)①농산물의 포장치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.

1. 한국산업규격(KS T 1002)에서 정한 수송포장 계열치수
2. 별표 2에서 정하는 골판지 상자, 지대, 폴리에틸렌대(P.E.대), 직물제 포대(P.P대), 그물망, 플라스틱 상자, 다단식 목재상자 · 금속재 상자, 발포폴리스티렌 상자의 포장규격
3. T-11형 파렛트(1,100x1,100mm)의 평면 적재효율이 90% 이상인 것

②골판지 상자, 발포폴리스티렌 상자의 높이는 해당 농산물의 포장이 가능한 적정 높이로 하고, 화훼류 중 절화류의 골판지 상자의 높이는 300mm 이내로 한다.

별표 2의 6. 발포폴리스티렌상자

일련번호	포장치수(길이mm x너비mm)
1	440x310
2	365x250
3	350x240
4	535x340
5	250x195
6	250x190

※포장재의 두께는 20 ~30mm이어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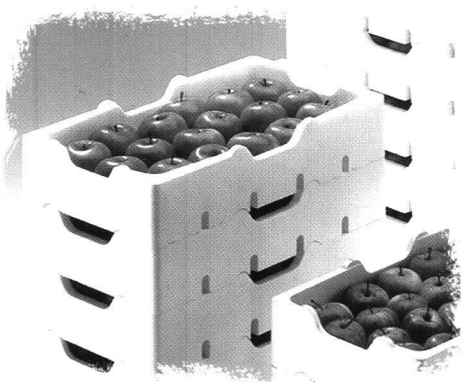

한편 농산물품질관리원은 협회가 요청한 「농산물 표준 규격」의 발포폴리스티렌 두께 조정 요청에 대해 EPS 상자의 제조 · 유통현황에 대한 점검 결과, 농산물 포장수치로 설정 된 두께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제품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어 향후 표준 규격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알려왔다. 이에 따라 2012년 EPS 포장재를 사용하는 규격출하사업자의 경우 포장치수는 평면적재효율(90%이상)만 적용한다.

한편 그 동안 문제가 되었던 **포장재비 지원금**은 2012년 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세부추진요령(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)에 따라 딸기, 포도, 버섯류 등은 모든 포장재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**공동 선별 작업의 경우에만 공동선별비가 지원**된다.

공동선별비는 공동계산액이 연간 15억원 이상인 사업자로써 농산물 표준규격 표시사항 준수 및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며, 표준규격에 따라 공동선별 · 공동출하 · 공동계산하는 경우에 지원된다.